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523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0. 5. 25.
4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II 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동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2015.7.24.에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법률 13428호)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 감채기금이 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 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조례안 [별첨 7])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조례안 [별첨2]).
3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.
4. 기타
 - 가. 입법예고(2020. 4. 20. ~ 5. 10.) : 제출의견 없음.
 - 나.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.
 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.
 - 라. 학생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23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감채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감채기금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동 감채기금은 구(舊)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(현행 「지방회계법」 제 19조)¹⁾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2010년 9월 30일 동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.
- 동 감채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나, 현행 조례가 지방채 상환재원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년간 기금 적립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.
- 또한 2015년 7월 24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가²⁾

1)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

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동 기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23일로 그 존속기한이 도래할 예정에 있습니다.

- 더욱이 동 감채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중복적인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,

동 조례안이 현재 감채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관계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